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한정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603

발의연월일: 2024. 11. 14.

발 의 자:한정애·박홍배·권향엽

김준형 • 이재강 • 정성호

홍기원 · 송옥주 · 조인철

양문석 • 박홍근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23년 기준 우리나라 초·중·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청소년은 1,770여명임.

이 중 제3국에서 출생하여 중도 입국한 탈북학생은 주로 중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어 구사 능력이 낮으며, 학업 공백으로 인해 낮은 학력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입국 초기 교우관계 형성 및 학교 적응 과정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결과 탈북학생 들의 학업중단은 일반학생의 약 2배 수준에 달함.

한편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 서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공유재산을 수의(隨意) 의 방법으로 대부하거나 사용·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 하고 있는 바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학교 부지를 찾는 등 불안 정한 여건으로 탈북 청소년들의 학습권이 제대로 보장되기 어려움 또한 특례의 대상이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제한 되어 있어 탈북청소년의 10%가 다니고 있는 대안학교나 대안교육기 관은 특례 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있음

이에 탈북청소년이 다니는 학교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·수익뿐만 아니라 매각도 가능할 수 있게 하고, 대안교육기관도 특례의 대상으로 포함시켜 탈북청소년이 안정적인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(안 제24조의3).

법률 제 호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의3제1항 중 "학교로서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" 를 "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, 「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"으로, "대부하거나"를 "대부 ·매각하거나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부·매각과 사용·수익의 내용,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제24조의3(공유재산의 대부・사 제24조의3(공유재산의 대부・사 용 등에 관한 특례) ① 지방자 | 용 등에 관한 특례) ① -----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의 정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북 한이탈주민이나 그 자녀를 대 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로서 「초・중등교육법」 제2 중등교육법ᅟ 제2조에 따른 학 조에 따른 학교에 수의(隨意)의 교, 「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 방법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・수 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 익하게 할 수 있다. 교육기관---------대부·매각하거나----② (생략) ② (현행과 같음)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 <신 설> 부 · 매각과 사용 · 수익의 내용,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.